

## 미국 민간항공보안 법규정에 대한 고찰\*

이주형\*\* · 황호원\*\*\*

### 목 차

- I. 서 론
- II. 항공보안 법령, 규정 및 프로그램
- III. 결 론

\* 본 논문은 미국 항공보안 법규정 연구를 통하여 한국 항공보안 발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논문이다.

\*\* 한국항공대학교 대학원 항공우주법전공 박사과정.

\*\*\* 한국항공대학교 우주법학부 교수.

## I. 서론

민간항공 시작되어 운영된지 10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민간항공 분야의 발전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안전 보안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민간항공에 대한 안전보안 위협은 민간항공 자체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항공 발전에서 미국을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미국의 민간항공에 대한 영향은 전세계적으로 크다고 하겠다. 현재 미국은 민간항공에 대한 테러위협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대응 대책도 다른 나라보다 많이 연구하고 있다. 민간항공보안은 법적 체제가 공고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미국은 증가하는 보안위협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과 예산을 투입하여 우수한 법적 장치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미국 항공보안에 대한 법규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 항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항공보안 법령, 규정 및 프로그램

### 1. 일반사항

#### (1) 개요

미국의 항공보안 법령, 규정,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보안의 규모만큼 복잡하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는 한국에서 적용가능하거나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항공보안 관련 법령, 규정,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 (2) 미국 법령 기본사항

미국의 법규의 종류는 크게 연방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연방 법률(Federal Laws), 조약(Convention), 연방집행법령(Federal executive order), 행정법규 (administrative ruel) 및 규칙(Regulation), 주헌법(State constitution), 주법률(State Statues), 주행정법규(State administrative rule) 및 규칙(State regulation)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은 미국에서는 Public Law라고 명명하는데 영문 해석상은 공법으로 해석이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규범력을 가진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sup>1)</sup>

미국법령의 법전 편찬방식에는 Slip Law<sup>2)</sup>, Session Law<sup>3)</sup>, Code , Annotate Code<sup>4)</sup>등으로 구분해서 편찬하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U.S.C<sup>5)</sup>방식으로 이 방식은 주제별로 표제번호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인데 미국 법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으로 여겨진다. 이 방식에 따라 구성된 법령은 6년에 한 번 씩 공식 개정판이 발간되며 변경이 있는 경우 증보판이 발간된다.<sup>6)</sup>

## (3) 미국법령의 내용

미국 법령은 “The Code of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공식적으로 명명되어져 있다. 공식적으로 51개의 분야(titles) 로 구성되어져 있다. 매 6년마다 전면 개정(main edition)된 부분을 발간하고 있다.<sup>7)</sup> 일반 개정부분(cumulative supplements)은 매년 첨부로 부착되어져 발간된다.

법령 분류에는 여러 가지 방식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USC방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전체 주요 내용을 주제별로 명시하고 있다. 전체 51개의 주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주요 구분은 Title 1에서 Title 5까지는 조직 등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대통령, 정부조직 등의 법규가 포함되어져 있다.Title 6는 정부

1) 법령정보센터(2007) “미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P62.

2) 단행법률의 제정시 마다 팜플렛형식으로 정보제공하는 방식.

3) 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

4) Code에 수록된 법률에 입법취지등을 첨부한 분류방식.

5) United States Code의 약어.

6) 법령정보센터(2007) “미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P70.

7) The 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발간.

보증채 관련 내용이나 이 부분은 삭제되어 있다.

Title 7부터 Title 51까지는 국가 주요 법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어져 있다. 항공분야의 법령은 Title 49에 교통(Transportation)분야에 포함되어져 있다.

#### (4) 미국 연방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주제별 내용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각 연방조직의 책임자들이 연방규정을 제정한다. 연방규정은 일반 및 영구 법규 및 규정(the general and permanent rules and regulations)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규정은 분야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항공을 포함한 연방법규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이 연방규정은 Chapter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Chapter는 Part로 나누어지며 Part는 다시 Section으로 나뉜다. Section이 가장 작은 기본단계이다.

연방규정(CFR) 제정의 목적은 공식적이고 완전한 조직의 규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구적인 연방규정의 일반사항을 관련자들이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는 연방 기관에서 발간하며 연방규정은 일일 연방관보에 매일 최신화 되며 이를 통하여 최신의 연방법규정을 이해 할 수 있다.

연방 규정은 총 50개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연방업무 관련하여 광범위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관련 연방기관은 관련 항목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진반저긴 책임을 진다. 연방 규정 판(CFR annual edition)은 매년 발간된다.<sup>8)</sup> 이와 아울러 비공식적인 형태로 온라인에서 발간되기도 하는데 규정변경시 변경후 2일이내에 인터넷 관련사이트에 등재된다. 각 연방규정은 chapters, parts, sections and paragraphs로 구분이 된다. 연방규정은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 42 CFR 260.11(a)(1) : “title 42, part 260, section 11, paragraph (a)(1).”

8)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part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and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에서 발간.

## 2. 항공보안 관련 법률

### (1) 항공교통보안법

항공교통보안법은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보안 관련 법령이다. 본 법령은 최신의 위협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보안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공식 명칭은 “항공교통보안법(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PL-107-71)”으로 2001년 발생한 미 테러사건이후 법령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2001년 11월 19일 긴급히 제정된 법령이다.

#### 1) 배경

911 사건 이전부터 항공보안에 대한 강력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제정 등의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많은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항공보안에 대한 체계적이며 강력한 법령을 요구하였으나 논의만 계속되었으며 제대로 된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2001년 911사건이 발생하자 미 정부에서는 항공보안에 대한 전면적 제도개선을 포함한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으며 마침내 관련 법령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2) 주요내용<sup>9)</sup>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위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항공보안 관련 전문기관 설립이다.<sup>10)</sup> 그동안 항공보안 업무는 미연방항공청에서 담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며 항공보안 전문 기관 구성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요건을 을 명시하였다. 미국의 항공보안업무는 본 법령에 의거 신설된 교통보안청(Trans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교통보안청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차관급 항공보안청장을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하며, 임기는 5년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항공기 조종실 안전조치이다.<sup>11)</sup> 조종실보안은 미 911 테러사건 당시

9) 김종복(2002), “미국항공보안법 소개”, 항공우주법학회지, p 10.

10) ATSA SEC 101.

11) ATSA Section 104.

발생한 가장 취약한 요소중의 하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건장치가 갖춘 조종실 보안문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 조종실문은 방탄문으로 제작하여 외부 침입을 완전히 저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조종실 출입문은 비행시 잠금장치를 유지토록 하며 운항승무원 만이 조종실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보안검색이다.<sup>12)</sup>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은 탑승전 실시토록 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항 보안 요원을 교통보안청 소속의 연방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보안 요원이외에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의 여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미국 100대 공항에 총기를 소지한 무장 법집행관을 배치하도록 하여 승객검색대에 대한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위탁보안검색은 2002년 12월31일부터 폭발물 탐지시스템에 의하여 검색토록 하였다.

넷째, 비용회수 요건이다.<sup>13)</sup> 보안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보안 법령에 최대 2.5분의 보안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여 보안업무에 필요한 제정확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전쟁보험 부담이다. 미911사건의 영향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와 거래 관계있는 여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쟁보험 부보를 성실히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기타 주요 내용이다. 먼저 교통보안위원회의 신설이다.<sup>14)</sup> 이는 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 교통보안위원회를 신설하여 교통보안, 특히 항공보안 관련 여러 결정사항을 다루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출입통제 및 외곽 경비강화, 비행학교 안전조치, 의심스러운 행위 보고 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항보안 업무 수행자에 대하여 위협하거나 안전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10년 이하 형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중신형 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5)</sup>

---

12) ATSA Section 108,110.

13) ATSA Section 116.

14) ATSA Section 102.

15) ATSA Section 114.

### 3) 검토

본 항공교통보안법은 미국의 항공보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법령제정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가장 큰 의의는 항공보안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항공보안 전문 책임 기관인 교통보안청의 법적 기능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인하여 미국 항공보안강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 주요 항공보안 관련 법령

##### 1)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of 1985 (PL 99-83)<sup>16)</sup>

1985년 제정된 국제협력법(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of 1985)은 1985년 발생한 TWA 항공기 납치사건이후 제정된 법령이다. 이 법령은 TWA 항공사건 직후 의회에서 국제 항공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1985년 8월8일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발효되었다. 본법 5장 (Title V)에는 외국공항에 대한 보안 점검을 명시하고 있다. 본 법령은 국무부 장관이 외국공항보안에 대한 평가관련 협력을 하도록 하며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국제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FAA<sup>17)</sup>에서 외국공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상공항은 미국적기가 운항하는 공항과 외국적기가 미국으로 출발하는 마지막 출발지 공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법령은 보안규정 미준수 외국공항에 대하여 해당공항의 이름을 일반에게 공개토록 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항공기 운항을 금지토록 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에 의거 국무부장관은 항공기 피납 및 기타 공항보안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보안요원을 국제항공편에 탑승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거 규정이 기내보안 요원 프로그램 운영의 근간이 되었다.

16) An original bill to amend the 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 the Arms Export Control Act and other acts to authorize appropriations for the fiscal year 1986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development assistance, the Peace Corps, the Inter-American Foundation, and the African Development Foundation, and for other purposes.

17) 현재는 TSA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2) Anti Hijacking Act of 1974

최초의 미국 항공기 납치관련 법령이다. 미국에서 1960년 말부터 발생한 항공기 피납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하였다.

## 3)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 Act of 1990(PL 101-604)<sup>18)</sup>

이 법령은 1987년 발생한 PSA항공기 추락사건과 1988년 발생한 팬암사건 발생에 따라 항공보안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재정배경은 팬암사건 발생 후 1989년 설립된 항공보안 및 테러 관련 대통령 위원회<sup>19)</sup>에서 항공보안 발전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였으며 보고서 발간후 2개월내에 본 법령이 제안되었다. 아울러 당시의 항공보안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되게 되었다. 특히 팬암사건 조사결과 폭발물이 은닉된 수하물 검색에 취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첨단 폭발물 탐지 시스템 개발을 하도록 본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이법규정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 하겠다.

아울러 테러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책임기관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안구역으로 인솔 없이 진입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원조회를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위탁수하물 검색강화, 항공기 진입자에 대한 통제강화, 보안테스트, X-ray 장비 추가설치 및 승객 검색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항보안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승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4) Aviation & Anti-terrorism act of 1996

TWA 사건을 계기로 항공테러 법령이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실제로 이법령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18) 공식명칭은 “To promote and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and for other purposes”임.

19) Presdinet’s Commission on Aviation Security and Terrorism.



### 5) Aviation Security Provision in the FAA Re-authorization Act 1996(PL 104-264)<sup>20)</sup>

1996년 발생한 TWA사건으로 인하여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1996년 10월 9일 발효되었다. 항공보안에 대한 여러 주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색회사 인증, 폭발물 탐지 장비, 장비 배치, 신원조사, 승객 프로파일링, 공항보안 프로그램 사용, 수하물 일치 보고서, 화물보안 및 국제 테러 대응 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6) Airport Security and Improvement Act of 2000 (PL 106-528)<sup>21)</sup>

2000년 4월 상원에서 최초로 제안한 법령으로 1996년 FAA Reauthorization act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재정 배경은 교통부와 GAO<sup>22)</sup>에서 발표한 보안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2000년 11월 22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제정되었다. 이 법령은 공항 및 항공사 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조사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있으며 신원조사 결격조항도 언급하였다. 공항출입통제 강화요건과 아울러 문제점발생시 FAA청장이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하물 검색에 대한 무작위 비율 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 7) The 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 (PL 108-176)<sup>23)</sup>

본 법령의 일부로 항공보안 재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 공식명칭은 “To amend title 49, United States Code, to reauthorize programs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nd for other purposes.”

21) 공식명칭은 “A bill to amend title 49, United States Code, to improve airport security.”

22) General Accounting Office로 미국의 감사원.

23) 공식명칭은 “To amend title 49, United States Code, to reauthorize programs for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and for other purposes.”

## 8)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PL 107-296)<sup>24)</sup>

본 법령은 미 국토안보부 설립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령으로 2003년 12월 대통령 승인으로 제정되었다. 국토안보부의 권한과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 3. 항공보안 규정

#### (1) 개요

항공보안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1970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연방항공 보안규정(Federal Aviation Security Regulation)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당시 보안검색을 최초로 규정한 것도 이 연방항공 보안규정이었다.

연방항공 보안규정은 미911사건이후 전면 개정이 되면 새로운 체계로 수립되게 되었다. 새로운 체계로 변경된 연방항공 보안규정에는 민간항공보안 일반규칙, 공항보안, 항공사 보안, 화물보안, 경항공 보안등 보안 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안규정 수립책임은 교통보안청장에게 있으며 청장은 연방규정 수립후 이에 대한 감독에 대한 총괄 책임도 진다.

#### (2) 민간항공보안 일반규칙(General Rule)(1540)

본 규정은 민간항공보안의 전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민간항공보안과 관련된 승객, 직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외국항공사에 대한 적용법규를 명시하고 있다.

#### (3) 공항보안 규정(1542)

공항보안 규정은 TSA에 의해 승인된 보안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져 있다. 공항보안 프로그램은 보안지역설치, 항공운항지역 설치, 공항출입증 패용구역 설치, 출입통제 시스템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24) 공식명칭은 “To establis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for other purposes.”

또한 신원조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항보안 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항보안 지침에 대한 요건도 포함되어져 있다.

#### (4) 항공사 보안규정(1544)

본 규정은 정기운항, 대중전세기, 민간전세기 및 기타 항공기 운영자가 지켜야 할 규정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항공사가 TSA에 의해 승인된 보안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승객 검색 및 물품검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 탑승하는 법집행관의 요건과 신원조사 요건이 포함되어져 있으며 항공사에게 발행된 보안지침 준수에 대한 요건도 포함되어져 있다.

#### (5) 외국항공사 보안(1546)

본 규정은 미국에서 운항하며 교통부로부터 허가증을 받은 외국항공사에 대한 보안 준수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사가 TSA에 의해 승인된 보안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승객 검색 및 물품검색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기내 탑승하는 법집행관의 요건과 신원조사 요건이 포함되어져 있다.

#### (6) 간접항공사 보안(1548)

본 규정은 화물운송업자와 같은 간접항공사 보안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본 규정은 보안프로그램을 채택, 시행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비인가된 폭발물 또는 발화물이 여객기에 반입방지 대책에 대한 수행요건이 포함되어져 있다.

#### (7) 화물보안검색 프로그램(1549)

본 규정은 TSA에 의해 화물검색시설로 인가된 업체<sup>25)</sup>가 지켜야 할 보안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업체는 TSA에 의거 여객기에 탑재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에 대한 보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25) Certified Cargo Screening Facility (CCSF).

**(8) 일반 운영하의 항공기 보안(1550)**

보안요건이 적용되는 많은 항공사에 대한 보안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일반항공 운영자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9) 항공학교 보안(1552)**

본 규정은 외국인 또는 TSA에 의해 금지된 자에 대하여 항공학교에서 운항 관련 교육을 금지토록 하는 규정이다. 아울러 항공학교에서 모든 교육생에 대하여 보안일반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0) 항공기 정비시설 보안(1554)**

본 규정은 FAA에 의해 인가된 국내 및 외국 항공기 수리를 담당하는 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할 보안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기의 부품 수리시 이에 대한 보안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11) 보안운항프로그램(1560)**

본 규정은 TSA가 보안 운항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항공사의 정보를 연방정부의 감시프로그램 정보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더욱 더 신속하게 여행 금지자를 찾아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워싱턴 항공운항지역 규정(1562)**

본 규정은 워싱턴 지역 비행금지 지역 규정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4. 기타 항공보안 프로그램****(1) 개요**

미국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테러위협에 대응하고 항공보안을 보다 실질적으

로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항공보안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안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sup>26)</sup>

### (2) 사전검사 프로그램(TSA Precheck Programme)

본 프로그램은 911 이후 강화된 승객 검색으로 인하여 보안검색에 대한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자 이를 보완하여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원활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입되었다.

### (3) 보안운항프로그램(Secure Flight Programme)

본 프로그램은 승객의 위험정도 등을 파악하여 항공기 탑승여부, 추가 보안 검색여부 등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911 이전에는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져 있으나 사건 이후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 (4) 기내보안요원프로그램(Air Marshall Programme)

본 프로그램도 미국 911 사건 발생이후 보안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항공기 보안 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보안사건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 정부 소속의 전문 훈련된 보안요원을 탑승시켜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그 목표이다. 기내보안프로그램은 1960년도 후반에 이미 시행되었으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점점 유명 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미 911 사건이전에는 겨우 50여명의 기내보안 요원만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사건이후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어 본격적으로 기내보안 요원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5) 행동탐지 프로그램(Behavior Analysis Programme)

본 프로그램 또한 911 사건 발생 후 보안 강화 대책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26) 현재 5천5백만명이 이용하고 있음.

시스템으로 위해 승객을 가려내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더 정밀한 보안 검색을 위하여 수상한 승객행동 인지 등 더 체계적인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여 본 행동탐지 프로그램이 도입, 실행되게 되었다.

### (6) 탐지견 프로그램(K-9 Programme)

1972년 TWA 항공기에 대한 폭발물 위협사건 발생하였다. 당시 탐지견<sup>27)</sup>이 폭발물을 폭파 12분내에 찾아낸 이후 연방차원의 폭발물 탐지견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FAA 주관하에 탐지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TSA로 업무과 이관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 III. 결 론

### 1. 한국 현황

한국 법규정 체제는 일반적으로 ICAO의 법규정 체제를 따르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필요에 따라 항공보안 관련요건 및 항목을 첨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항공규모가 크고 많은 공항, 항공사를 관리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항공보안 법령이 더욱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미국과 한국법 규정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분야별로 한국과 미국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항공보안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양국간 항공보안 분야별 법령 비교

미국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관련 법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항공보안법에 의거 보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7) 주로 사용되는 탐지견 종류는 Labradors, Chesapeake Bay Retrievers, Golden Retrievers이다.

있다. 너무나 분야가 광범위하여 책임, 보안프로그램, 승객검색, 수하물 검색, 출입통제, 비상대응, 기타 사항 등 6개의 주요한 분야에 대하여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 (1) 책임

항공보안 관련 책임은 양 국가 모두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교통보안법에 항공보안 관련 주 책임을 교통보안청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보안청장이 각종 지침을 발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교통보안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관련 주요 사항을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항공보안법에 유사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보안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긴급지시등 항공보안 관련 지침을 제정 관련 공항운영자, 항공사, 화물업체 등에 시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공항보안프로그램 및 항공사 보안프로그램

공항보안프로그램 수립요건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국에서 1970년대 최초로 이 요건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제규정에 반영되었다. 공항운영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승인은 미교통보안청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항공사 보안프로그램도 항공사가 수립, TSA청장 또는 그의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ICAO 보안요건을 근거로 공항보안프로그램인 자체 보안 계획을 수립토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 보안프로그램도 항공사 자체보안 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대한민국 운항하는 항공사가 수립하여 이를 국토부에 승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3) 승객 및 수하물검색

미국의 경우 승객 및 수하물 검색에 대한 책임은 항공교통보안법에 의거하여 교통보안청에서 수행한다. 이에 대한 장비 구매 또한 교통보안청에서 담당하여

운영한다. 다만 샌프란시스코 등 6개 공항에 대하여는 민간업체에서 교통보안청 책임하에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항공보안법규에 의거 공항운영자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안장비 구매를 포함한 모든 보안 검색 업무를 공항운영자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4) 출입통제

미국의 공항 보안 출입통제의 경우 법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출입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주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신원조사 및 출입증 발급 또한 공항운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항공보안법에 의거하여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 통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5) 비상대응

항공기 테러, 지상공격 등 비상시 대응 관련 사항으로 미국에서는 경찰에서 공항운영자와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우발계획은 공항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항 우발계획은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며 이에 대한 협력을 각 관련 기관과 하도록 하고 있다.

#### (6) 기타 관련 사항

기타 관련 사항으로 미국에서는 911 사건후 비행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최근 테러 위협에 따라 항공기 정비시설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화 하였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특별한 위협이 없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요건이 규정되어져 있지 않다.



〈표1 - 주제별 비교〉

항목	미국	한국
책임	항공교통 보안법에 관련 책임 명확히 규정	항공보안법에 명확히 규정
공항보안 프로그램	보안법에 보안프로그램 수립토록 규정, 연방항공규정 1542에 상세내용 포함	항공보안법에 공항운영자 수립토록 규정, 상세내용 시행령에 포함
승객검색 및 수하물 검색	항공교통보안법에 책임사항 및 상세내용 규정	항공보안법에 상세내용 규정
출입통제	출입통제에 대한 책임 공항운영자가 지도록 명시	항공보안법에 근거 공항운영자가 수행
비상시 대응	비상대응은 공항에서 우발계획수립하며 관련기관과 협력	항공보안법에 의거 공항운영자가 우발계획 수립, 관련기관과 협력 대응
기타항목	항공훈련시설에 대한 보안, 항공기 정비시설에 대한 세부규정 명시	테러 위협이 없어 구체적인 항목없음

### 3. 프로그램

미국은 항공보안 법규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 테러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 (1) 사전검사프로그램(Precheck Programme)

미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사프로그램은 한국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상용여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를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우리의 경우 승객검색에 대하여 동일하게 검색토록 법규정에 명시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프로그램 수립을 하도록 하였다.

## (2) 기내보안요원(Air Marshall Programme)

기내보안요원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운영되도록 규정화하고 있다. 현재는 항공테러 위협이 낮아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으나 향후 테러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3) 보안운항프로그램(Secure flight Programme)

보안운항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전에 프로파일링 개념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인데 위험승객 판별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경우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없다.

## (4) 행동탐지 프로그램(Behavior Analysis Programme)

행동 탐지 프로그램은 미국이 911이후 도입한 것으로 이제 미국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 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주행 미국적 항공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다.

## (5) 탐지견 프로그램(K-9 Programme)

탐지견 프로그램은 미국과 유럽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탐지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신뢰하여 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탐지견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는 없으며 경찰특공대 등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다.

〈표2 - 프로그램별 비교〉

항목	미국	한국	비고
Pre Check Programme	시행중	시행하지 않음	-
Air Marshall Programme	시행중	관련규정 마련	-
Secure Flight Programme	시행중	공식시행없음	-
Behavior Analysis Programme	시행중	검토	-
K-9 Programme	시행중	일부시행	-

### 3. 맺음말

미국의 법령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모든 항공보안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부분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과 아울러 항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여러 방면의 미국의 좋은 체계는 신속히 검토하여 한국형 항공보안 법령체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김종복, “미국항공보안법 소개”, 항공우주법학회지, 2004.  
법령정보센터 “미국법의 체계와 검색방법” 2007.

### <외국문헌>

US, Aviation Transportation and Security Act 2001.  
Bartholomew Elias, Airport and Aviation Security, 2009.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 of 1985 (PL 99-83).  
Anti Hijacking Act of 1974.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 Act of 1990(PL 101-604).  
Airport Security and Improvement Act of 2000(PL 106-528).  
Aviation Security Provision in the FAA Re-authorization Act 1996(PL 104-264).  
The 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PL 108-176).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PL 107-296).  
CFR 49 Part 1540 Civil Aviation Security: General Rules.  
CFR 49 Part 1542 Airport Security.  
CFR 49 Part 1544 Aircraft Operator Security: Air Carriers and Commercial Operators.  
CFR 49 Part 1546 Foreign Air Carrier Security.  
CFR 49 Part 1548 Indirect Air Carrier Security.  
CFR 49 Part 1549 Certified Cargo Screening Program.  
CFR 49Part 1550 Aircraft Security Under General Operating and Flight Rules.  
CFR 49 Part 1552 Flight Schools.  
CFR 49 Part 1554 Aircraft Repair Station Security.  
CFR 49 Part 1560 Secure Flight Program.  
CFR 49 Part 1562 Operations in the Washington, DC, Metropolitan Area.

## 초 록

미 911 사건으로 전 세계 민간 항공보안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미국정부는 기존의 항공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한 새로운 항공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변화중 가장 큰 변화는 항공보안 법 규정이다. 새로 2001년 제정된 항공교통보안법에 따라, 미국의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관련된 연방항공보안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항보안 프로그램, 항공사보안프로그램, 탐지견 프로그램, 행동탐지요원 프로그램, 기내 무장보안요원 프로그램 등 새로운 항공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항공보안 시스템은 더욱더 개선 발전되었다.

또한 항공교통보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미 교통보안청은 미국의 항공보안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항공보안 시스템, 특히 항공보안 법령에 대한 연구를 하며 이를 한국의 항공보안 법령과의 비교 연구하여 한국 항공보안 시스템의 발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항공, 보안, 미국법령, 미국연방항공 규정, 미국보안 프로그램, 항공보안 테러, 미교통보안청, 항공 테러

## Abstract

### A Study on US Civil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s & Regulations

Lee, Joo-Hyung\* · Hwang, Ho-Won\*\*

US 911 incidents have changed all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world. Especially the US changed all existing system into new on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hanges is aviation security acts, regulation and several programmes. Based on the new aviation security act enacted in 2001, several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US aviation security system.

These regulation also enable new aviation security programmes including several airline and airport security related programmes, K-9 programme, BDO programme and air marshall programmed. All the programmes enables US aviation security improvements.

Also the creating of TSA based on the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has provided the enhancement of aviation security in U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the change of aviation security system in the US especially in terms of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perfective and comparing the system with Korean aviation security legal system and provides possible solution to enhance Korean aviation security legislation and structure.

**Key Words :** Aviation, Security, US legislation, US CFR, US security programme, Aviation Terrorism,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 Doctor's Course of Aviation Law of Korean Aerospace University.

\*\* Professor of Korea Aerospace University.